

제 호

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2. 대표자 성명:
3. 법인등록번호:
4. 주소:

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
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